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9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강훈식·허 영·문진석

윤종군 • 김우영 • 김영진

진성준 • 모경종 • 김성회

신영대 · 임미애 · 이개호

민형배 • 이성윤 • 김교흥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 기관으로서 시설 및 발달재활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4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운영 중인 기관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 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	4
비스의 제공경험 및 전문성, 서	
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	
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에 해당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한
여 운영할 수 있다.	기관으로서 시설 및 발달재활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기관"이라 한다)으로
<u><신 설></u>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
	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u><신 설></u>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4
	에 따른 발달재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